『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『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』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으로 『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3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보고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

1)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면적	종사자수	비 고
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	금천구 금하로30길54 (시립금천청소년센터 내, 2층)	200㎡	5명	

2) 위탁현황

가) 수탁기관 : (재)푸른나무재단 (대표 : 문용린)

나) 위탁기간 : 2018. 7. 1. ~ 2021. 6. 30. (최초위탁 : 2013. 7. 1.)

다) 운영인력 : 총 5명

라) 운영예산 : 267,470천원

나. 주요위탁 내용

1) 위탁기간 : 3년(2021. 7. 1. ~ 2024. 6. 30.)

2) 위탁내용 : 『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』 관리・운영 전반

가) 위기청소년 발굴, 상담, 보호, 긴급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재공

나) 심리 치료 및 상담, 학교폭력 및 위기문제 예방 프로그램 운영

다)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안전망 구축

3) 선정방법

가)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평가

-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시 재계약, 70점 미만시 위탁 법인 공개 모집 공고

4) 운 영 비 : 연267백만원(국비 48백만원, 시비48백만원, 구비170백만원)

3. 재계약 사유

가.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, 긴급구조, 자립,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기관임

나. 연평균 1,2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15,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보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

다.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 시설 없이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일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, 현 수탁법인인 (재)푸른나무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계약 심사 추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
2)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, 제13조, 제15조
3)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

1) 25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
2)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

관계법령

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9조 (운영의 위탁)

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· 운영(이하 "운영"이라 한다)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,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 (위원회 구성 · 운영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· 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.

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

제15조 (수탁기간)

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